

의안번호	2208544
의 퇴 인	조은희 의원
회 답 일	2025. 4. 7.
추 계 번호	25B1191

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)	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하고 현장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함(제1항) 1. 승객 신원 및 현황 조사 및 보고 2. 유가족 소통 및 정보공유 3. 언론대응 및 브리핑 4. 그 밖에 항공기사고 초기대응 및 피해구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2	안 제6조(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업무)	지원단은 초기대응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음(제1항) 1. 항공기의 운영자, 제작자, 항공사 직원 및 그 밖의 관계인(이하 “사고관계인”이라 한다)에 대한 탑승객 명단 등 항공기사고 관련 정보의 제출 요청 2. 사고관계인에 대한 인원 및 물자 제공을 통한 현장 대응 협력 요청	재량규정
3	안 제8조(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)	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4	안 제10조(지원의 원칙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함(제1항)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·건강·복지·돌봄·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(제2항) 국가등은 외국인, 장애인,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5	안 제12조(생활지원금 등)	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(이하 “생활지원금등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음(제1항) 1. 생활지원금: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. 의료지원금: 피해자의 항공기사고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,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	재량규정
6	안 제13조(심리상담 등의 지원)	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7	안 제14조(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·치료)	국가는 피해자가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8	안 제16조(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)	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9	안 제17조(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등에 대한 특례)	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봄(제1항)	의무규정
		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국가등은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10	안 제18조(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)	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(제2항)	
11	안 제19조(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)	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, 금융기관,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

Ⅲ. 미첨부 사유

□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(안 제5조, 제6조 및 제8조)

- 제정안은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하고 현장책임자를 임명하며, 유해안치를 위한 설비 등의 마련, 피해자에 대한 연락책 등 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제정안은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지원단의 규모, 구체적인 업무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생활지원금 등 지원(안 제10조,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,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)

- 제정안은 국가 등이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, 의료지원금, 심리상담, 심리적 증상 등의 검사·치료, 근로자의 치유휴직 관련 비용,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제정안은 각 지원 사항의 구체적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, 방법,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참고로, 세월호 참사 당시 각 부처별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
 - 첨부 [참고자료 1] 부처별 세월호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추진현황 참고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부처별 세월호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추진현황

(국무조정실 세월호지원단 제출자료)

□ 피해지원 사업

○ 완료사업

항목	완료 연도	지원내용	지원실적	담당부처
생활 지원금	2015년	○ 대상 : 희생자·구조자가 속한 가구 ○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- 희생자 : 4인기준 259만원 - 구조자 : 4인기준 129만5천원 ○ 기간 : 1회 지급(∼'15.11.19)	○ 447가구(1,745명), 960백만원	해양수산부
긴급복지 지원	2015년	○ 대상 : 희생자가 속한 가구 ○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상당액 지급 * 4인 가구 1,105,600원/월 ○ 기간 : 최대 6개월	○ 276가구(775명), 718백만원	보건복지부
대입 특별전형	2015년	○ 대상 :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재학생 ○ 내용 : 수시모집(9월), 정시모집(12월)시 해당 학생들이 특별전형 대학에 지원	○ 수시 76명, 정시 2명	교육부
근로자 치유휴직	2016년	○ 대상 : 근로자인 피해자 ○ 기간 : 1년 이내 신청(∼'16.3.28), 최대 6개월 휴직	○ 20개 사업장(21명)	고용노동부
고용유지 비용	2016년	○ 대상 :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○ 내용 : 휴직자 최대 월120만원, 대체인력 월60만원 ○ 기간 : 최대 6개월	○ 20개 사업장 92백만원	고용노동부
교육비	2017년	○ 내용 : 초·중·고, 대학생 교육비 지원 ○ 기간 : 법 시행일('15.3)로부터 1년(초중고), 2학기(대학생) 지원	○ 초중고 : 1,914명, 2,124백만원 ○ 대학생 : 119명, 388백만원	교육부
단원고 교육 정상화	2017년	○ 내용 : 학교 시설·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, 교직원의 확보·배치 및 우대, 전문상담기구(마음건강센터 등) 설치·운영 등 ○ 기간 : ∼'17.3.28	○ 교육환경개선 추진 : 8,638백만원 ○ 교원확보·배치관련 우대 ○ 마음건강센터운영('16.6월 종료)	교육부
공동체 회복 프로그램	2024년	○ 대상 :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 ○ 내용 :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시행	○ 112억원	행정안전부

○ 계속사업

항목	시작연도	지원내용	지원실적 ('24.12월 기준)	담당부처
안산 마음건강 센터 건립·운영	2017년	○ 내용 : 세월호 피해자 등 트라우마 사례관리 및 진료, 종합적 정신건 강 관리 서비스 제공 *(건립) '24.11월 준공 (운영) '25.1 월~	○ 건립비용 : 417억 원 ○ 운영비용 : 63억 원(1년)	보건복지부
공동체 복합시설	2018년	○ 내용 : 안산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 로 심리상담 및 건강·돌봄·문화 서비스 제공 * (착공) '24.8월	○ 건립비용 : 161억 원	행정안전부
지역경제활 성화 사업	2015년	○ 내용 :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 - 투자선도지구 조성 등 총 15개 사 업	○ 지원비용 : 493억 원	각 부처 및 지자체
의료 지원금	2014년	○ 대상 :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 ○ 내용 : 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·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 의 치료, 간병 또는 보조장구에 소 요되는 비용	○ 지원비용 : 102억 원	보건복지부
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	2015년	○ 대상 : 친권자가 사망 또는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 피해자 ○ 내용 : 성년이 될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	○ 양육보조금, 상해 보험료, 아동 심리 치료 지원 등	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
교직원 휴직	2015년	○ 대상 : 사고 당시 단원고 재직 교 직원 ○ 내용 : 휴직기간 봉급·수당 등 전 액 지급, 경력평정 기간 및 승급기 간 산입	○ 대상자 106명 중 총 89명 휴직	교육부
심리상담 지원	2014년	○ 대상 : 피해자 및 유가족 ○ 안산, 제주, 인천 등 세월호 피해 자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	○ 안산, 제주, 인천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 램 운영 등	보건복지부
금융거래 협조	2015년	○ 대상 : 금융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	○ 금융부담 완화(금 리인하 3건, 상환 유예 4건) ○ 소상공인 재해자 금 상환기간 연장 58건	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 업부

□ 추모사업

○ 완료사업

항목	완료연도	지원내용	지원실적	담당부처
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	2016년	○ 내용 : 일반인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인천에 추모관 건립	○ 건립비용 : 31억 원	해양수산부
해양안전사 고 예방 훈련시설 운영	2023년	○ 내용 : 해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시설 건립	○ 건립비용 - 진도 국민해양안 전관 : 270억원 - 안산 해양안전체 험관 : 400억원	해양수산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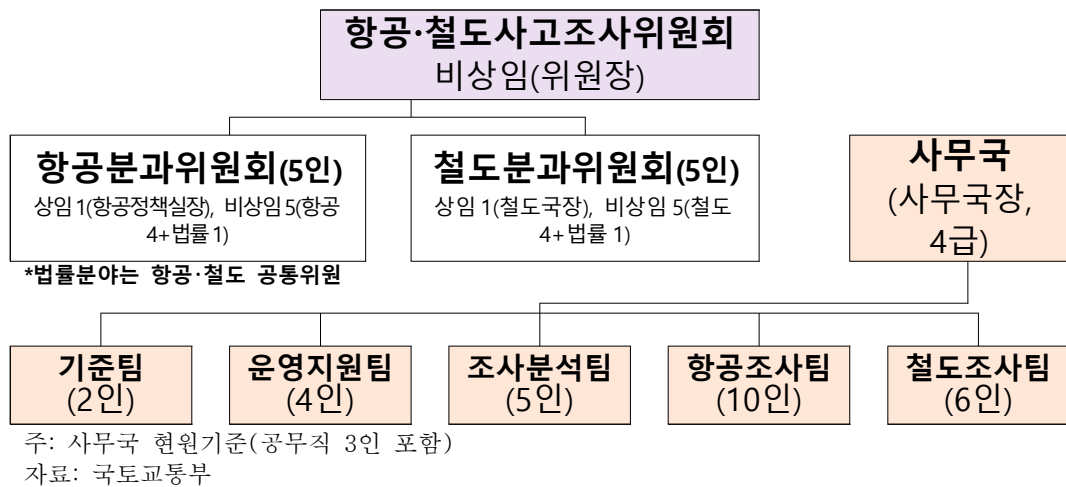
○ 계속사업

항목	시작연도	지원내용	지원실적 (’24.12월 기준)	담당부처
안산세월호 추모시설 (가칭4.16생 명안전공원)	2019년	○ 내용 : 희생자 추모와 시민 문화·편의시설이 복합된 문화공원 조성 * (착공) ’24.11월	○ 건립비용 : 509억 원	해양수산부
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	2019년	○ 내용 : 희생자 추모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등이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명품문화공원 조성	○ 건립비용 : 303억 원	해양수산부
4.16 재단지원	2019년	○ 내용 : 희생자를 추모하고,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출연·보조	○ 지원비용 : 147억 원	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

[참고자료 2]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구성 현황

(국토교통부 제출자료)

- (조직·인원) 위원장(비상임), 2개 분과위(항공+철도), 사무국(사무국장, 5팀)



- (사무국) 정원 29명 / 현원 28명

계	일반직(11/12)			전문임기제(사조조사관)		공무직 3명
	4급	5급	6급 이하	가급	나급	
29/28 (정원/현원)	1/1	5/6	5/5	3/3	12/10	3/3 (영어자문관, 청소원, 시설관리원)

주: 사고조사관은 '전문임기제' 공무원으로 정원은 별도정원으로 확보, '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'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경력경쟁공개채용을 거쳐 임용(1년단위 계약, 사조위 사무국 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, 최대 5년)

자료: 국토교통부

- (25년 예산) 2,033백만원(인건비 제외)